

프로세스명	규정 · 지침 > 경영관리 > 경영일반 > 정관 (P11100, R8)		
담당자	김종현	담당부서	재무그룹
시행일	2025-03-24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DX(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한글로는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라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POSCO DX COMPANY LTD. (약호 POSCO DX)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관련사업
-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임대업
- 3.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 4. 정보처리기기 및 주변기기, 통신설비, 전자응용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 5.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서비스업
- 6. 산업용 전기자동제어기기 등의 설계, 제조, 설치공사, 판매업무
- 7. 자동제어기기 정비, 보수의 기술용역 및 정비부품의 공급 업무
- 8. 집단에너지 사업,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 9. 연료전지 및 부대설비 설계, 제조, 판매업
- 10. 신재생 에너지 관련설비 설계, 제조, 판매, 설치공사
- 11.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업
- 12.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무
- 13. 가스공급 및 처리시설의 공사업무
- 14. 소방설비, 기계설비, 산업설비의 설계 및 설치공사 업무
- 15.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제품 및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공사 업무
- 16. 철도 및 차량 관련 설비(신호시스템, PSD 등)의 제조, 판매, 수입, 공사 및 유지 보수 업무
- 17.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종합공사사업무
- 18. 물품취급장비 제조, 설치, 보수관련업무(자동창고시스템, 콘베이어, 에스컬레이터, 주차기 등)
- 19. 에너지효율화 및 관련기술의 설계, 제조, 설치공사 업무
- 20. 반도체 조명기기의 설계, 제조, 판매업
- 21. CDM(청정개발체제) 및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수행 및 매매업
- 22. 이동체 통신사업
- 23.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무선사업, 교환설비보유 재판매사업, 교환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 구내통신사업)
- 24. 종합 유선방송 사업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
- 25. 방사선관련 특수목적기계의 판매, 설치, 보수 업무
- 26 수출입, 수출입대행, 수출입 대리(OFFER)업무
- 27. 정보산업에 관련된 서적 출판업
- 28.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
- 29. 경영컨설팅사업
- 30. 상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dx.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300천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삭제>

제10조(주권 불소지)

<삭제>

제10조의 2(주식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일반공모증자 등)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우선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익소각)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의 2 (전자주주명부) 회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7조(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2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의 2 (채권의 전자등록)
<삭제>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과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 주주는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에 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감소(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1항에 의함)
3.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4.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5.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6.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경우
7. 회사의 합병계약
8. 이사회가 회사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9. 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사실이 있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정지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35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7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員數)를 결(缺)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간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 참석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1조(이사회 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긴급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경위와 집행 사항을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이사회 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 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ESG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비등기임원)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직책에 비등기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등기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그 보수와 성과금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퇴직금 기준에 준한다.
④ 비등기임원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⑤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6조 단서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5조(이사의 보상) 본 회사는 이사가 본 회사 이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③ 사외이사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고문 및 촉탁)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명으로 임원대우의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

제48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 제49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일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51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3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5조(외부감사인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56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상법시행령으로 정한 서류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
5. 영업보고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잉여금의 처분)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로써 다음 각 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2(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 배당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20)

(시행일)

이 정관은 제1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3.20)

(시행일)

제 1조(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 정관은 제 1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의 시행전에 선임된 이사 및 감사가 본 개정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으로 신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집행임원의 임기로 한다.

부 칙 (2004.3.18)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1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3.7)

본 개정 정관은 제1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5)

본 개정 정관은 제18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6)

본 개정 정관은 제19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19)

본 개정 정관은 제2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8)

본 개정 정관은 (주)포스콘과의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19)

본 개정 정관은 제2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1.3.18)

본 개정 정관은 제2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30)

본 개정 정관 중 제2조와 제42조는 제2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나머지 조항은 2012.4.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14)

본 개정 정관은 제2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9.3.18)

본 개정 정관은 제3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20조의 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

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5)

본 개정 정관은 제3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20)

본 개정 정관은 제3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본 개정 정관은 제35기 제2회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24)

본 개정 정관은 제3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문서	회사 정관 개정 이력 (2010년~상세) (pptx_208KB) .html
------	---